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인한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의 경우 직급보조비를 20만 원 감액하여 지급(별표 6의2)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 비고 나) 중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별표 6의2</p> <p>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지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법원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250,000원</td> <td rowspan="5">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u>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u>」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은 20만원을 감액한다.</td> </tr> <tr> <td>대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1,650,000원</td> </tr> <tr> <td>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950,000원</td> </tr> <tr> <td>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750,000원</td> </tr> <tr> <td>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월지금액	비고	대법원장	2,250,000원	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 <u>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u>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은 20만원을 감액한다.	대법관	1,65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9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75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500,000원	<p>별표 6의2</p> <p>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지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법원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250,000원</td> <td rowspan="5">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u>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u>」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u>」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 -----.</td> </tr> <tr> <td>대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1,650,000원</td> </tr> <tr> <td>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950,000원</td> </tr> <tr> <td>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750,000원</td> </tr> <tr> <td>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월지금액	비고	대법원장	2,250,000원	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 <u>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u>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u> 」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 -----.	대법관	1,65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9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75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500,000원
지급대상	월지금액	비고																											
대법원장	2,250,000원	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 <u>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u>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은 20만원을 감액한다.																											
대법관	1,65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9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75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500,000원																												
지급대상	월지금액	비고																											
대법원장	2,250,000원	가)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한다. 나) 「 <u>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u>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u> 」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 -----.																											
대법관	1,65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9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75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500,000원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24